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24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서천호의원안)	2

I. 개요

1.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602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1. 14.
- (3) 회 부 일 : 2026. 1.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논·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액,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 어로·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비과세하고 있어 농·어업에 비하여 임업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림·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 소득에 대하여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임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등(서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비과세 사업소득 (제12조제2호마목)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u>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000만원 이하의 금액</u>	☐ <삭 제>
☐ <신 설>	☐ <u>영림업, 벌목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u>
☐ <신 설>	☐ <u>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0억원 이하의 금액</u>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서천호의원안 2026. 1. 14. 제출(의안번호 16024)

☐ 개정안은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임업 소득을 구분하여 영림업, 벌목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의 경우에는 그 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의 경우에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 따른 농업·어업·임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음.
먼저 농업소득의 경우,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¹⁾되고,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인 작물재배업 소득,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그 외의 농어가 부업소득은 비과세 대상임²⁾.

어업소득은 당초 어로 어업만을 주업으로 인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합계액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였으나,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양식어업을 어로 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확대하였음³⁾.

-
- 1)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마. 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립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

한편, 임업소득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하였으나, 최근 2025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비과세한도가 연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음.

- 개정안은 농업·어업에 비해 임업 관련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낮다는 문제의식 하에 임업 관련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영림업 및 벌목업의 경우 현행법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연 3,0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조림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도록 하며,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의 경우 기존에는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하도록 비과세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임.

[현행과 개정안 간 비과세 한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영림업·벌목업	연 3,000만원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에 한함)	전액 비과세 (조림기간 제한 없음)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	연 10억원

-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첫째, 농·어가 대비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가에 대한 세 제지원을 확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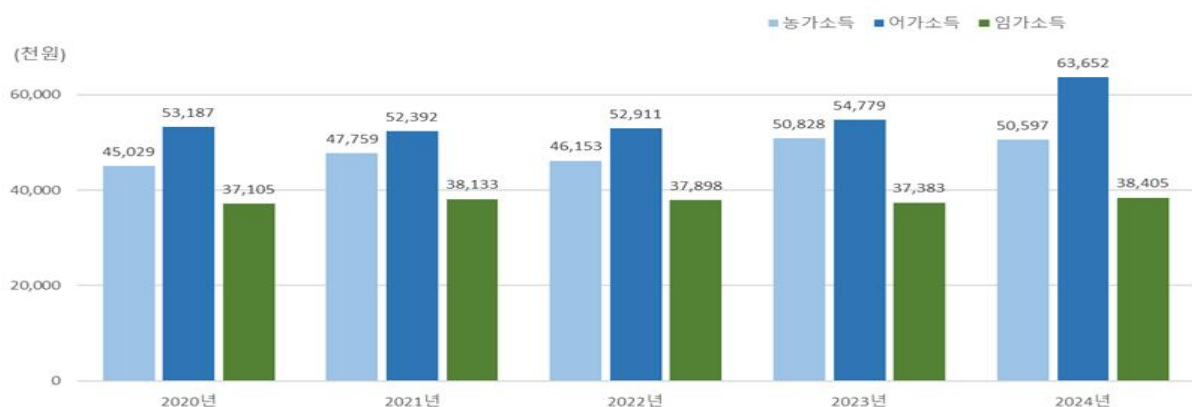
농·어가 가구소득 대비 임가소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도에는 농가의 75.9%, 어가의 60.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3년간 임가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어4)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임가와 농·어가 가구소득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농가소득	45,029	47,759	46,153	50,828	50,597
어가소득	53,187	52,392	52,911	54,779	63,652
임가소득	37,105	38,133	37,898	37,383	38,405
임가/농가 소득(%)	82.4	79.8	82.1	73.5	75.9
임가/어가 소득(%)	69.8	72.8	71.6	68.2	60.3
임가부채	28,912	27,294	27,618	29,141	30,240
임가 소득대비 부채비율(%)	77.92%	71.58%	72.87%	77.95%	78.7

자료: 국가데이터처(「농가·어가 경제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산림청(「임가 경제조사」)



둘째, 최근 2025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임업 관련 비과세소득 한도

4) 2021년 71.58% → 2022년 72.87% → 2023년 77.95% → 2024년 78.7%

가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2023년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까지 확대되는 등 농업·어업 소득에 비해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주요 농업·어업·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현황]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과세 한도
농업	작물 재배업	벼,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전액 비과세
		채소, 화훼, 과실, 음료용작물 시설작물 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축산업	소 사육업	50마리 이하 : 전액 비과세 50마리 초과 : 소득금액 3천만원
		양돈업	700마리 이하 : 전액 비과세 700마리 초과 : 소득금액 3천만원
어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임업	임목 벌채·양도 소득	-	연 3천만원 이하

특히 개정안은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도 신설하고 있는데, 축산업이나 양식어업에 대해서도 일정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신고된 임업의 사업소득금액은 97억 7,100만원, 벌목업은 176억 5,400만원, 임산물

채취업은 3억 2,300만원임.

[2024년 기준 임업 분야별 사업소득금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임업	별목업	임산물 채취업
신고건수	459	695	47
사업소득금액	9,771	17,654	3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에서 조림기간 5년 이상의 임지의 임목에 대한 임업 소득을 대상으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조림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비과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양식어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한도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 중 ‘채소, 화훼, 과실, 음료용작물, 시설작물 재배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동 비과세 한도는 과거 FTA 체결로

인하여 특별하게 높게 설정된 비과세 한도로,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현행 비과세 한도가 연 5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따라서 비과세
 한도의 설정에 있어서 이러한 농·어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를 상향하는 경우 2027년 11.2억원, 2031년 20.0억원 등 5년간 총
 94.8억원(연평균 19.0억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
 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안 제12조제2호)	△11.2	△21.8	△21.2	△20.6	△20.0	△94.8	△1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7